산업통상자원부 http://www.motie.go.kr	보 도 자 료	정부혁신 보다나은 정부

2019년 12월 31일(화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(인터넷, 방송, 통신은 12. 30.(월) 오전 11시 이후 보도 가능)

배포일시	2019. 12. 30(월)	담당부서	산업기술개발과
담당과장	이재식 과장(044-203-4520)	담 당 자	조원철 사무관(044-203-4534)

안전과제 지정 특별관리, R&D 과제 정기 안전점검 등 산업기술 R&D 全주기(기획-선정-진행) 안전성 강화

- 공통운영요령, 기술개발평가관리지침 등 산업기술 R&D 규정 개정 -

□ 산업통상자원부(장관 성윤모)는 12월 31일(화) **연구개발사업의 안전성을 대폭 강화**하는 내용으로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등 **산업기술 R&D 관리 규정***을 **개정·고시**하였다.

*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(산업부 고시)
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, 관리 및 사용, 정산에 관한 요령(산업부고시)
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평가관리지침 (산업부 예규)

○ 강릉 수소사고 등 R&D 과제에 대한 안전관리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, 산업부는 수소 안전 강화대책*과 더불어 **산업부 연구개발 과제**에 대한 **안전관리조치를 강화할 필요**가 있다고 판단하여,

* "수소 안전관리 종합대책" ('19.12.27일, 산업부 발표)

○ 그간 산업기술평가관리원 등 R&D과제 **전담기관**과 협의하여 **개선방안**을 마련하고, 기업 및 연구소, 대학 등 **연구 수행자**의 **의견 수렴**을 거쳐 이번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R&D 관리규정 개정안을 마련하였다.

□ 금번 개정되는 R&D 관리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.

1 과제기획 단계부터 중점 안전관리 대상과제를 지정하여 특별관리한다.

○ 과제 **기획 단계**에 **안전 전문가**가 **참여**하여 안전사고 사례 분석을 통한 **재해요인 분석**, 안전관리기준 유무 등의 **안전성 검토**를 실시하여, **재해유발 위험**이 높거나 **위험물질**을 취급하는 등 **사람의 신체, 재산**에 **피해**를 줄 가능성이 있어 중점 안전관리가 필요한 과제를 **안전관리 대상과제**(이하 '안전과제')로 지정한다.

* 다만, 사업자 선정단계에서 세부 과제내용이 결정되는 자유공모 과제에 대해서는 사업자 선정 후 안전과제 해당 여부를 결정

○ **안전과제**는 안전 전문가 6~7인으로 구성하는 별도 **전문위원회**에서 과제제안서(RFP)에 포함할 **안전관리 사항**을 **심의**한다.

○ 산업부는 **안전과제 지정, 안전관리사항 기획 전문성 확보, 안전관리 전담** 등을 위해, 전담기관에 에너지 분야 **안전담당 PD**를 신설하고, 산업 등 기타 분야에는 **안전 전문가**를 **채용**할 예정이다.('20년 1분기)

○ 또한, 안전과제로 분류되지 않은 **일반과제**에 대해서도 **연구실 단위 안전관리 계획**에 반드시 포함할 **내용**을 구체적으로 **명시***하는 등 안전관리를 지금보다 강화한다.

* 안전책임자 지정, 자체 안전관리규정 제정 및 운영, 안전관리비 사용 방안, 안전사고 발생시 보고 및 조치 방안, 사고발생시 대처요령, 안전교육 실시 등

2 안전과제 수행기관을 선정하는 단계에서 안전관리계획이 부실한 기관은 사업자로 선정되지 못 하도록 관리한다.

○ **안전과제**를 수행하려는 연구자는 사업자 선정과정에 참여시 제출하는 사업계획서에 **과제 단위 안전관리계획**을 **제출**하여야 하며,

○ 과제 단위의 안전관리 계획의 적정성을 선정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하여 **안전관리 계획이 부실**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사업자로서 선정되지 못 하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였다.

○ 또한, 산업기술평가관리원 등 R&D 전담기관은 **선정된 사업자의 안전관리 계획**에 대해 **보완**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.

3 **과제수행 기간중에 연구 현장에 대해 정기점검을 실시하고, 과제 수행 종료 후에도 일정한 안전조치를 이행하도록 규정한다.**

○ 안전과제 수행 사업자는 **안전조치 계획의 이행여부**에 대한 **실태**를 정기적으로 **R&D 전담기관에게 보고**하도록 하였으며,

○ 안전과제 중 **위험물질**을 **취급**하는 과제는 별도로 지정하여 전기·가스안전공사 등 안전관리 전문기관의 **정기 점검**(연 1회 원칙)을 받도록 하였다.

○ 또한, 연구책임자의 역할에 안전관리를 추가하였으며, 연구수행자가 안전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등 **안전성에 문제가 예상**될 경우에는 보완요청을 하거나 **과제**를 **중단**시킬 수 있는 **근거 규정을 마련**하여 과제 수행 중 안전관리를 강화하였다.

○ 또한, 강릉과학단지 수소폭발 사고가 과제 종료 후에 발생한 사고임을 감안하여, 안전과제는 **과제종료 후**에도 안전책임자를 지정토록 하여 **안전조치**를 이행한 결과를 정기적으로 R&D 전담기관에 보고토록 하는 등 **사후 관리**를 강화하였다.

4 **R&D 수행기관의 부담 완화를 위해 현장점검 컨설팅 등을 실시하고, 기술·환경변화에 따라 융통성 있게 과제를 운영한다.**

○ **정기 점검**에 소요되는 비용을 **R&D 사업비에서 사용**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, 중소기업 등 안전관리 역량이 취약한 기관이 요청할 경우 R&D 전담기관으로 하여금 **안전관리 컨설팅**을 지원하는 등 **연구기관의 부담 완화**를 위한 개선대책을 함께 마련하였다.

○ 또한, 과제 수행기관의 신청 또는 R&D 전담기관의 판단에 따라 **재평가를 시행**하여 **일반과제와 안전과제로 지정된 사항**을 과제 진행 기간 중에도 **사후 조정**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기술·환경 변화 등에 따라 **융통성 있게 대처**하도록 하였다.

□ **이번 개정사항**은 **'20년**에 **신규 공고**하는 **과제**부터 **적용**하되, 규정 개정 시점이 과제기획 절차가 마무리 단계인 점을 감안하여 **'20년 2월말까지 신규 공고**하는 **과제**는 사업자 **선정 후**에 **안전과제 해당 여부**를 **검토**하고 안전과제에 해당할 경우 안전관리 계획을 제출토록 운영할 계획이며,

○ 이미 진행 중인 **계속과제**에 대해서도 **안전과제 해당 여부**를 **'20년 중**에 **평가**한 이후 과제 진행상황 등을 감안하여 이번 개정 사항을 과제별 특성에 맞게 적용할 예정이다.

□ 산업부 관계자는 "이번 개정으로 **R&D 수행 기간 및 종료 후의 안전관리가 강화**될 것으로 **기대**하며, **앞으로도 연구수행자와 국민의 안전 확보를 위해 계속 노력**하겠다"고 밝혔다.

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개발과 조원철 사무관(☎ 044-203-4534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첨부 **금번 개정으로 강화되는 내용 비교**

구분		현행	개선(안)	대상
기획	**기획에 안전전문가 참여**	없음	반드시 참여 + 별도 전문위원회 운영	모든 과제
	기획과정에 안전성 검토	비명문화	명문화	모든 과제
	안전과제 지정 검토	없음	중점 안전관리 대상은 안전과제로 지정	모든 과제
신청 및 선정	**연구실단위 안전계획**	제출	제출 + 내용 구체화	모든 과제
	과제단위 안전계획	없음	제출	안전과제
	안전계획이 부적정한 사업자 미선정	없음	가능	안전과제
	안전계획 보완요청 권한	없음	전담기관에 부여	모든 과제
과제 수행	**안전조치 이행실태 보고**	없음	정기보고(연1회)	안전과제
	안전관리 전문기관 정기점검	없음	정기점검 실시 + 점검비용 지원	위험물질 취급과제
	컨설팅형 현장점검	없음	진도점검시 실시	신청 기관
	안전성 문제시 보완요청/중단	없음	가능	모든 과제
	안전과제로 지정 일반과제로 해제	없음	가능	모든 과제
	연구책임자 역할(안전관리)	없음	신설	모든 과제
사후 관리	**과제종료 후 안전조치 이행실태보고**	없음	신설	안전과제
	안전책임자 지정, 변경	없음	신설 (전담기관 보고)	안전과제